

##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2. 4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12. 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12. 14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남평우)

가. 제안이유

○ 부천체육관 관리운영 등 각종 시설의 전문 경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확대가 요구됨

에 따라

- 사업영역 변경과 중앙정부 지침에 부합토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 개정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조문개정(안 제1조)
  - 주차사업·문화사업 등 ⇒ 주차사업·문화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
- 상임감사·이사제 조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(안 제7조제3항, 제9조제1항, 제13조제2항)
  - 상임감사는 비상임감사로 전환
  - 상임이사 정수 조항 신설
- 당연직이사의 담당업무 범위 조정(안 제14조제2항)
  - 당초 : 시의 예산업무, 주차사업, 문화사업 관련 담당과장
  - 조정 : 시의 공단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의 담당과장
- 사업목적에 부합토록 “체육시설 관리운영” 등 세부사업 추가(안 제17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상임감사 2명은 비상임으로 해야 되는데 규정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?	○ 당시 업무를 맡지 않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
○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이 상임감사를 비상임으로 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?	○ 네.
○ 행사부 경영평가에서 수익성, 고객만족, 전국 최하위인데 맞습니까?	○ 네.
○ 주차, 문화사업이 최하위인데 체육시설 업무 추가는 명분과 설득력이 없지 않은지?	○ 공단은 수익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사업은 이윤을 추구할 수 없어 7천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.
○ 조례에 없는 상임감사를 정관을 만들어 임명한 배경은 무엇입니까?	○ 조례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해 상임감사를 임명한 것입니다.
○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까?	○ 시설관리공단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합니다.
○ 7조4항 신설이 필요합니까?	○ 상임직급을 조례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두고 있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상임감사 처리문제가 있으니 제7조제4항을 수정하여 통과시켜줌이 타당할 것임

나. 반대토론

○ 주차, 문화사업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도 전국 최하위인데 또 시설관리사업을 추가하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수정안 요지

○ 별 첨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경영평가에 대한 책임은 저야 할 것임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411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23 (제83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14

제 출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사업영역 변경과 중앙정부 지침에 부합토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
- 제7조4항 "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, 정원 50인 이상 150인 미만일 경우에는 1명, 150명 이상 300명 이하는 2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."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인데 현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정원 49명에 일용직 포함 270명이지만 2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삭제

2. 주요골자

- "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, 정원 50인 이상 150인 미만일 경우에는 1명, 150명 이상 300명 이하는 2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."는 규정을 삭제(안 제7조4항)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임원) ①~③(생략) (신설)	제7조(임원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, 정원 50인 이상 150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, 150명 이상 300명 이하는 2명을 상임 으로 할 수 있다.	제7조(임원) ①~③(생략) ④(삭제)

###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관련 제411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23 (제83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부천체육관 관리운영 등 각종 시설의 전문 경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확대가 요구됨에 따라
- 사업영역 변경과 중앙정부 지침에 부합토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 개정코자 함

주요골자

-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조문개정(안 제1조)
  - 주차사업·문화사업 등 ⇒ 주차사업·문화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
- 상임감사·이사제 조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(안 제7조제3항, 제9조제1항, 제13조제2항)
  - 상임감사는 비상임감사로 전환
  - 상임이사 정수 조항 신설
- 당연직이사의 담당업무 범위 조정(안 제14조제2항)
  - 당초 : 시의 예산업무, 주차사업, 문화사업 관련 담당과장
  - 조정 : 시의 공단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의 담당과장
- 사업목적에 부합토록 “체육시설 관리운영” 등 세부사업 추가(안 제17조제1항)

[수정안 포함]

###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주차사업·문화사업 등”을 “주차사업·문화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감사는 시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되 비상임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”을 “이사장·이사의 임기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상임감사”를 “감사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시의 예산업무, 주차관리 및 견인업무와 여성·체육청소년·문화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”을 “시의 공단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의 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“제5호 및 제6호”를 각각 “제6호 및 제7호”로 한다.

5. 체육시설관리운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하여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<u>주차사업·문화사업 등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.....  .....  <u>주차사업·문화사업·시설관리사업 등</u>.....  .....  .....</p>
<p>제7조(임원) ①~②(생략)  ③<u>감사는 시장이 임·면한다.</u></p>	<p>제7조(임원) ①~②(현행과 같음)  ③<u>감사는 시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되 비상임으로 한다.</u></p>
<p>제9조(임기 및 직무) ①<u>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9조(임기 및 직무) ①<u>이사장·이사의 임기는</u> .....  .....  .....</p>
<p>②~③(생략)  제13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(생략)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<u>상임감사</u>가 공단을 대표한다.</p>	<p>②~③(현행과 같음)  제13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(현행과 같음)  ②.....  .....<u>감사</u>.....  .....</p>

제14조(이사회) ①(생략)

②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, 시의 예산업무, 주차장관리 및 견인업무와 여성·체육청소년·문화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과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~⑥(생략)

제17조(사업) ①(생략)

1.~4. (생략)

(신설)

5.~6. (생략)

②~④(생략)

제14조(이사회) ①(현행과 같음)

②.....시의 공단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의 담당과장.....  
.....  
.....

③~⑥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사업) ①(현행과 같음)

1.~4. (현행과 같음)

5. 체육시설관리운영

6.~7. (현행과 같음)

②~④(현행과 같음)